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도지사”의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개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“도지사”라는 용어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‘도지사’라 한다)”로 개정하여, 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